

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21호
2021. 6. 14.(월)

차 례

공 고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2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12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 그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중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로 “효 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조정함(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공보

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기획공보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122), FAX(042-606-7910),

이메일(nodame@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공보실 담당자 오윤미(전화: 042-606-6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원장 또는 소장) 호문화마을관리원에는 원장을,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 또는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호문화마을관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호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호문화진흥을 위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지도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5. 노인휴양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② 뿌리공원관리사업소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뿌리공원 교통안전교육 시설관리 및 운영
3.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
4.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5.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뿌리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효문화마을관리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뿌리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원장) 효문화마을 관리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5조(원장) 효문화마을 관리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5조(원장 또는 소장) 효문화마을관리원에는 원장을,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 또는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4조(소관사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문화진흥을 위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지도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삭제 5.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6. 노인휴양사업 7.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8.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제16조(소관사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문화진흥을 위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지도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5. 노인휴양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뿌리공원 교통안전교육 시설관리 및 운영 	<p>제16조(소관사무) 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문화진흥을 위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상담지도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5. 노인휴양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p>② 뿌리공원관리사업소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뿌리공원의 운영 및

- 8. 뿌리공원 교통안전교육 시설관리 및 운영
- 9.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
- 10.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11.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뿌리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
- 10.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11.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뿌리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에 관한 사항
- 2. 뿌리공원 교통안전교육 시설관리 및 운영
- 3.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
- 4.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5.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뿌리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2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효문화마을관리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효문화마을관리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효문화마을관리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뿌리공원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 비 고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국·과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시 시설비 등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기획공보실 행정7급 오윤미(042-606-6122)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641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 그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중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4급 총 정원을 현행과 같이 동결하고 일반직 정원 증원을 34명에서 33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2조제1호 중 “826명”을 “825명”으로 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공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기획공보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122), FAX(042-606-7910),

이메일(nodame@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공보실 담당자 오윤미
(전화: 042-606-6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826명”을 “825명”으로 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44명					
정무직 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 계	842명					
3급	1명	1명				
4급	6명	4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785명					
별정직	1명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792명 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와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기구</th> <th>작속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81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809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명</td> <td>3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td> </tr> <tr> <td>5급</td> <td>46명</td> <td>21명</td> <td>2명</td> <td>4명</td> <td>2명</td> <td>17명</td> </tr> <tr> <td>6급 이하</td> <td>756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11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09명						3급	1명	1명					4급	6명	3명	1명	1명	1명		5급	46명	21명	2명	4명	2명	17명	6급 이하	756명						별정직	1명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826명 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와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기구</th> <th>작속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845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843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명</td> <td>4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td> </tr> <tr> <td>5급</td> <td>50명</td> <td>24명</td> <td>2명</td> <td>5명</td> <td>2명</td> <td>17명</td> </tr> <tr> <td>6급 이하</td> <td>785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45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43명						3급	1명	1명					4급	7명	4명	1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785명						별정직	1명						<p>제2조(정원의총수)</p> <p>-----</p> <p>-----</p> <p>-----</p> <p>1. 집행기관의 정원: 825명 2.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와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기구</th> <th>작속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844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842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명</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명</td> <td>4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r> <tr> <td>5급</td> <td>50명</td> <td>24명</td> <td>2명</td> <td>5명</td> <td>2명</td> <td>17명</td> </tr> <tr> <td>6급 이하</td> <td>785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td> <td>1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44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42명						3급	1명	1명					4급	6명	4명	1명	1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785명						별정직	1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11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09명																																																																																																																																																																																																																			
3급	1명	1명																																																																																																																																																																																																																		
4급	6명	3명	1명	1명	1명																																																																																																																																																																																																															
5급	46명	21명	2명	4명	2명	17명																																																																																																																																																																																																														
6급 이하	756명																																																																																																																																																																																																																			
별정직	1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45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43명																																																																																																																																																																																																																			
3급	1명	1명																																																																																																																																																																																																																		
4급	7명	4명	1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785명																																																																																																																																																																																																																			
별정직	1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작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844명																																																																																																																																																																																																																			
정무직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계	842명																																																																																																																																																																																																																			
3급	1명	1명																																																																																																																																																																																																																		
4급	6명	4명	1명	1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785명																																																																																																																																																																																																																			
별정직	1명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정원 33명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공무원 봉급 최근 3개년 평균 인상률 1.8%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인건비	1,819,764	1,852,520	1,885,866	1,919,812	1,954,369	9,432,331
	소계(b)	1,819,764	1,852,520	1,885,866	1,919,812	1,954,369	9,432,331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자체수입 (지방세 등)	1,819,764	1,852,520	1,885,866	1,919,812	1,954,369	9,432,331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819,764	1,852,520	1,885,866	1,919,812	1,954,369	9,432,331

5. 부대의견: 비용추계의 전제,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용추계액 변동 가능
6. 작성자: 기획공보실장(042-606-602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물건비(직급보조비), 경상이전(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성과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을 1년 치 총비용으로 함